

II. 정조호 신수로 개설사업

○ 사업 현황

- 위 치 : 속초, 청호동 2-4통 일대
- 사업량 : L=150 m , B=160 m (수로 100 m)
- 사업비 : 19,700백만원
- 항만시설 확충 : 물량장 861 m
- 신수로 개설 : 방파제 330m , 수로개설 100m , 건물보상 136세대
이주단지 조성 45,000 m² (13,600평)
- 시행청 : 항만청
- 총 사업기간 : '90 ~ '97

III. 보상업무 추진 내역

- '93. 6. 11 = 보상설명회 및 보상심의 위원회 개최
- '93. 11. 29 = 감정 평가 (항만청)
- '94. 2. 16 = 신수로 개설공사 보상내용 설명회 개최 (속초시, 항만청)
(보상가 산정기준 및 보상계획 설명)
- '94. 7. 1 = 보상대책 관련 관계관 회의 개최 (속초시)
- '94. 9. 7 = 보상업무 위탁 협약 체결
- '94. 10. 1 = 신수로 개설에 따른 보상 협의 공문 통보
- '94. 10. 10 = 보상 소요자금 수령 (항만청 → 속초시)
- '94. 10. 18 = 편입지구 주민 대표자 회의 (공유지 주민분양 요구 중점)
- '94. 11. 28 = 주민 간담회 개최
(사업내용, 보상실무에 대한 설명 및 토의)
- '95. 3. 4 = 주민 간담회 개최
(재평가 설명 및 보상 전반 사항)

Ⅱ. 조달청지 운영 현황

○ 사업 개요

- 택지조성 55,000 m² (124세대)
- 성 토 440,000 m²
- 포 장 165 a
- 기타 (상, 하수도) 1식

○ 사업 기간 : '94. 7 ~ '95. 12. 31

○ 소요 사업비 : 6,465 백만원

○ 시 행 청 : 해운항만청

○ 현 추진사항 : 설계 완료 , 조달청 입찰 요구

Ⅲ. 큰 제 점

○ 주민 요구 사항

- 현 법체계 및 제도상 불가한 공유지를 주민에게 직접 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특별보상 요구
- 지장물에 대한 실거래 가격으로 조정 보상 요구
- 이주단지 조성전 절대 협의 불응
- 이주자 택지 분양가격 10만원 / 평당 요구

Ⅳ. 대 책

- 이주정착금 지급에 대한 횡성 공동출장으로 민원해결 및 지장물 재조사
- 이주단지 완료전 보상협의후 '96 신수로 사업 시행시 철거
- 신수로 보상금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이전 조치
- 이주자 택지 분양가격 결정을 위하여 항만청과 지속적인 협의 추진

1. 2. 3. 4. 5.

- '95. 3. 4 주민대표와의 간담회 개최 내용중 황성담 수몰지구 편입주민에게 이주 정착금 20백만원이 지급된다는 점에 대해 청호동은 해당되는지 여부 문의가 있어 황성으로 출장, 보상지급 상황을 검토함

(검토 결과)

- 황성 다목적댐은 특정 다목적댐법의 규정에 의거 축조하는 사업으로 이주자에 대하여는 『특정다목적댐법』을 적용, 보상
- 특별 이주정착금등은 특정 다목적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기준에 의거 지급
- 동일유형 댐축조 공사라도 『하천법』을 적용하는 댐 수몰지 보상금 지급은 특정 다목적댐법에 의한 이주정착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
- 『항만법』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우리시 신수로개설공사의 보상(이주정착금 지급)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적용이 원칙.

※ 지급 금액

특 정 다 목 적 댐 법	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
· 이주정착지원금 : 세대당 800만원 · 생활안정지원금 : 세대구성원 1인당 100만원 (단, 세대당 4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음)	·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건물 평가액의 30 % ※ 위 금액이 3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300만원으로, 500만원 이상의 경우는 500만원을 지급